

[특허분쟁]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- 무고죄 책임, 벌금 3

백만원 선고: 전주지방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고단1750 판결



### 사안의 개요

- (1) 피고인 특허권자,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
- (2) 상대방 피무고자 -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,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,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-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,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
- (3) 피고인 특허권자 - 2015년 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+ 생산판매업체 -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
- (4) 특허권자 2015. 11.경 직접방문,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+ 상대방 - 다시 제안

거절

(5) 특허권자 2016. 1. 20.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, 내용증명 발송 + 생

산판매업체 -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

(6) 특허권자 -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

(7)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,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, 2017. 4. 28. 판결 확정

(8) 특허권자 2017. 5. 16.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

**법원 판단 - 무고죄 인정, 벌금 3백만원 선고**

**판결이유**

『피고소인 D은 (주)C 대표로 (주)C에서 제조하는 수제 초코파이의 제조과정과 관련 초코렛 함량, 부수물(호두, 딸기잼) 함량, 오트밀 함유 내역이 고소인의 특허권 권리범 위 내에 속하므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특허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』

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유죄 확정된 무고사건에서와 같이 (주)C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본건 역시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, 피고인의 (주)C 특허권 침해 주장은 (주)C가 피고인의 특허등록 훨씬 이전부터 수제초코파이를 생산해오 고 있던 자명한 사실 및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를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모순 된 행동을 하는 등에 비추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.

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 하였다.

## 양형의 이유

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무고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.

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, 피고인이 고소한 특허법 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,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.

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첨부: 전주지방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고단1750 판결

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십수년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